

건설기계등록번호표 봉인 방법 (제13조제3항 관련)

1. 봉인의 구조

건설기계등록번호표는 봉인 후에 봉인장치(제3호에 따른 표시 및 규격에 부합하는 봉인이 새겨진 볼트를 말하며, 이하 같다)를 떼어내면 해당 봉인장치의 재사용이 불가능한 구조로 봉인해야 한다.

2. 봉인장치의 재질 및 규격

- 가. 재질: 한국산업표준 일반구조용압연강재 SS235 또는 SS275 강재(鋼材)
- 나. 봉인 표시가 새겨진 봉인장치의 머리 부분(이하 “봉인두”라 한다)의 지름 (이하 “봉인지름”이라 한다): 10mm~12mm
- 다. 건설기계등록번호표 표면부터 봉인두 끝단까지의 길이: 6mm~8mm

3. 봉인의 표시 및 규격

